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87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4.

발 의 자: 강훈식·김병기·김남근

강준현 • 문진석 • 김교흥

김승원 • 박상혁 • 윤준병

김한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87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